



규정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
문서번호	TWP-B208
제정일자	2012. 03. 20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2
페이지	1/4

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위원회의 구성
- 제3장 위원회의 기능
부칙

작성부서	입학홍보처	제정일자	2012. 03. 20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
직 책	담 당	입학홍보처장	기획처장	교학부총장	총 장
서 명					
일 자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B208
		제정일자	2012. 03. 20.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학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신입생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위원회 구성

제2조(위원회 설치) 위원회는 총장의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**입학홍보처장**이 되고,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이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04.04., 2018.02.19.>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 및 주관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위원회 기능
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대학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
2.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
3.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
4.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(전형유형, 전형자료, 자격기준, 전형 방법, 전형일정, 모집인원 배분, 사정방법 등)

제6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사무관장) ① 위원회의 사무는 **입학홍보처**에서 관장한다. <2018.02.19.>

	규정		문서번호	TWP-B208
			제정일자	2012. 03. 20.
	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2

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입학전형관리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8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것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